

◆ 은평구고시 제2026-77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부분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
“응암역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”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13일

은 평 구 청 장

1.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조서

구분	공원명	시설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변경	역촌동	소공원	은평구 역촌동 85-34 일원	318.0	감) 133.9	184.1	2006.8.17. (서울특별시고시 제282호)	부분 실효

2. 실효일자 : 2016. 8. 18.

3. 실효사유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
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1:1000 Scale 도면)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‘참고용’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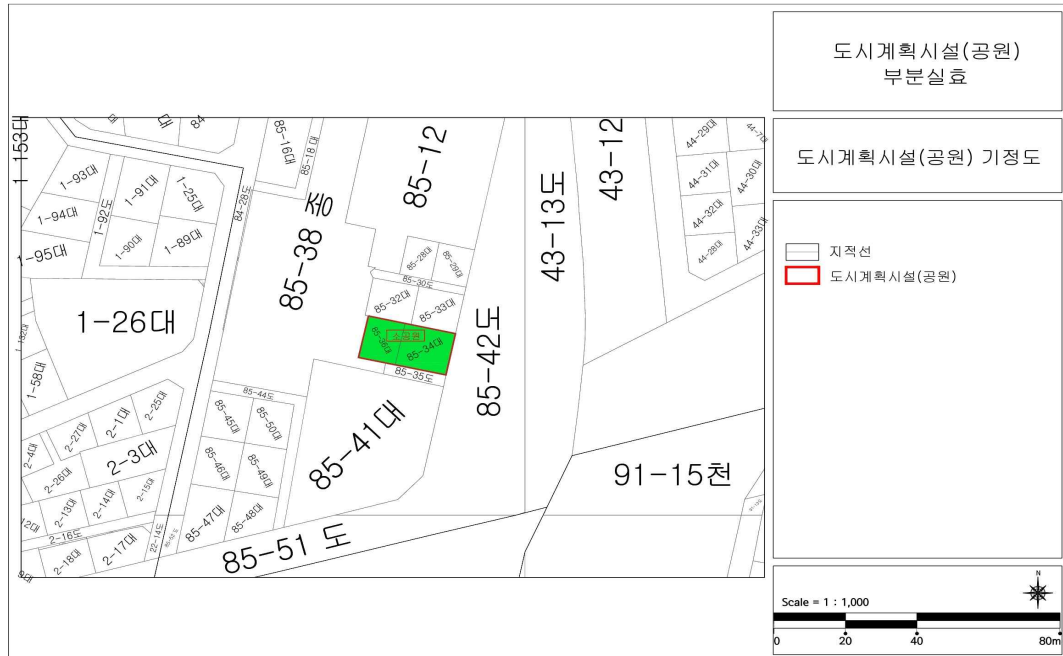
5. 열람장소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계획과(☎02-351-7413), 공원녹지과(☎02-351-8008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실효 지형도면(역촌동소공원)

- 기정



- 변경

